

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97호)

심사보고서

1998. 8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8. 18 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8. 19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8. 25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개정이유

- 정부의 지방행정기구·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정원을 감축하고,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.

3. 주요골자

- 본청·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개정(△ 87명)

- 본 청 : 241명 → 211명 (△ 30)
- 의회사무기구 : 13명 → 13명 (△ 0)
- 직속기관 : 140명 → 135명 (△ 5)
- 사업소 : 14명 → 13명 (△ 1)
- 읍 면 : 285명 → 234명 (△ 51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정부의 지방행정기구·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고,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
- 총 정원 693명 중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에서 87명을 감원한 60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신속하고 안정성 있는 행정 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금후 읍면과 사업소의 구조조정 방안은
- 답 : 금후 구조조정 대상은 사업소와 읍면이며, 2차 구조조정시에는 사업소의 조직기구 개편 및 인원감축 등을 재정비 할 예정이며, 읍면은 점차적으로 일부 인원만 잔류하고 대다수 인원은 감축 또는 본청에 재배치 할 예정임.
- 문 : 인력감축 87명을 본청, 읍면, 사업소별 구분하여 감원하는지
- 답 : 총 정원 위주로 직급별 감원할 계획임.
- 문 : 지탄공무원의 구조조정 대상에서 처리방안은
- 답 : 구조조정 대상에서 감원대상으로 고려하겠음.

6. 토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1998. 8. 25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